#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김영호·김윤덕·송재봉

박희승 · 김성환 · 강선우

한민수 • 박지원 • 강득구

문대림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·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,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인정되거나 중지·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조치결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.

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없이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(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),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21조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(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선거법위반행위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린 행위를 말한다)에 따라 제1항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 없이 그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결과(조치 결과에 이른 경과 및 판단 근거 등을 포함한다)를 상세히통보하여야 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벌칙)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를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형

개 정 안

第14條의2(選擧法違反行爲에 대한 중지・警告등) 各級選擧管理 委員會의 委員・職員은 職務遂 行중에 選擧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・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, 그 위반행위가 選擧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・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 管轄搜查機關에 搜查依賴 또는 告發할 수 있다.

第14條의2(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중지・警告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 고(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선거법위반행위를 각급선거관 리위원회에 알린 행위를 말한 다)에 따라 제1항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 원회 위원·직원은 선거법 위 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 없 이 그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한 사람에게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(조치 결과에 이 른 경과 및 판단 근거 등을 포

	<u>함한다)를 상세히 통보하여야</u>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21조(벌칙) 각급선거관리위원 회의 위원·직원이 제14조의2
	제2항에 따른 직무를 위반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
	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